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6일, 김용태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8.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태 의원)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을 조례로 위임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 등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별로 학교 및 학생수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학교교육의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또한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결수령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분장사무 관련

현행법상 교육장 분장사무에 관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만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을 추가하여 학교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호 의원, 김용태 의원, 추미애 의원, 민형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준석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